

DL이앤씨 (375500)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음

Flash Note

[건설/운송] 배세호 2122-9178 seho.bae@imfnsec.com

Check Point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DL이앤씨의 불복 주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히 납득 가능

Buy (Maintain)

목표주가(12M)	120,000원(유지)
종가(2026.06.23)	59,100원
상승여력	103.0 %

사우디의 무리한 과세 통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 당국(ZATCA)로부터 2006~2019년 EPC 수행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8,533억원(본세 4,392억원, 가산세 4,141억원)을 통보받았다. 전체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27%에 해당한다. DL이앤씨는 사우디 당국의 과세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DL이앤씨의 주장은 한국과 사우디의 조세 협약, 그리고 사우디의 소득세법을 근거할 시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사우디 과세당국간의 합의, 혹은 조세 심판 과정을 통해 추정세액은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또한 회계적으로도 과세 처분의 최종 확정 가능성과 금액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대규모 총당부채 인식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DL이앤씨의 불복 주장은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히 납득 가능

사우디 당국의 8,500여억원의 과세에 대해 DL이앤씨는 위법성을 주장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DL이앤씨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에서 수행한 E(Engineering), P(Procurement) 소득에 대한 귀속 문제이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E와 P는 DL이앤씨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 이미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우디가 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과 사우디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
- 2) 세금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이다. 사우디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10년이지만, 과세 통지에는 2006~2015년도 사업에 대하여도 과세를 진행하였다. 10년을 초과한 프로젝트를 제외할 시 세액은 160억원대 수준으로 감소한다.
- 3) 과세 산출 근거의 부족이다. DL이앤씨는 과세 당국이 과세 산정 방식, 한국, 사우디의 영역의 배분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과세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의 주장은 양 국의 법령에 근거할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한국과 사우디간 조세 조약 제7조 1항에 따르면 한쪽 계약국 기업의 이윤은 다른 한쪽 계약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한정된다. 즉, 사우디가 과세할 수 있는 범위는 DL이앤씨의 사우디 내 고정 사업장(공사 현장, 현장 사무소 등)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정한다. 실제 조세심판원 2015중1147 사례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사우디 내 고정 사업장 없이 한국 내에서 사우디 발주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 사우디가 원천징수를 하자, 조세심판원은 해당 세금이 한국과 사우디간 조세 조약상 적법하게 납부된 세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와 DL이앤씨는 사우디 내 고정 사업장의 유무에는 차이가 있지만, 조세심판원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한국이 과세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DL이앤씨 주장에 우호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우디 소득세법 65조 2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부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세 당국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세액을 수정할 수 있다. 즉,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DL이앤씨의 프로젝트 중 10년이 지난 프로젝트(2006~2015년)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 경과로 과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림1. DL이앤씨의 사우디 과세 처분 불복 주장

<p>4. 향후대책</p>	<p>- 당사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아래와 같은 과세 처분의 중대한 하자를 고려할 때, 동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p> <p>1) 부과 제척기간 경과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 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통지를 수령한 현재(2026년) 기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2006 ~ 2015)까지 포함하여 과세 진행 * 해당 기간(2006 ~ 2015) 부과세액 제외 시 약 160 억원대 수준으로 세액 감소</p> <p>2) 실제적 과세근거의 부재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과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의 판단 근거, 한국-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방식 등 과세 처분의 실체를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p> <p>3)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 본 건 설계 및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 형성이 불가함. 해당 과세 소득은 해당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 완료한 소득으로서, 해당 소득에 대하여 사우디에서도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국가 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에 해당</p>
----------------	---

자료: DL이앤씨,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7조)

1. 어느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경우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한 기업과 기타 인들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는 가정하에서 동 고정사업장이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 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으로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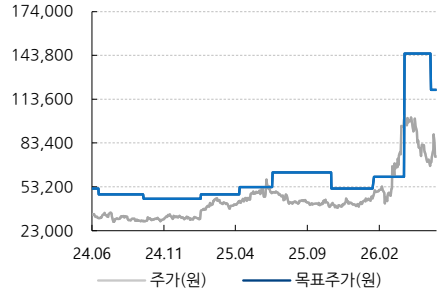
그림3. 사우디 소득세법(65조)

- income tax law (42)
- Article 65: Statutory Period of Tax Assessment**
- (a) The Department may, with a reasoned notification, make or amend a tax assessment within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deadline specified for filing the tax declaration for the taxable year, or at any time, upon a written consent of the taxpayer.
 - (b) The Department may make or amend an assessment within ten years of the deadline specified for filing the tax declaration for the taxable year if a taxpayer does not file its tax declaration, or it is found that the declaration is incomplete or incorrect with the intent of tax evasion.
 - (c) A taxpayer may request a refund of overpaid amounts at any time within five years from the end of the overpaid taxable year.

자료: ZATCA, iM증권 리서치본부

DL이앤씨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4-07-05	Buy	48,000	-33.8%	-26.1%
2024-10-08	Buy	45,000	-29.9%	-21.9%
2025-02-07	Buy	48,000	-14.3%	-5.4%
2025-04-30	Buy	53,000	-8.4%	9.8%
2025-07-09	Buy	63,000	-30.7%	-20.8%
2025-11-11	Buy	52,000	-19.3%	-10.6%
2026-02-09	Buy	60,000	1.3%	65.0%
2026-04-15	Buy	145,000	-40.4%	-30.3%
2026-06-10	Buy	120,000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산업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Overweight(비중확대)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Neutral(중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